

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수신자 영동건설(주)대표이사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현장대리인)

(경유)

제목 선금 배분내역 제출 요청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영동-20160902-01호('16.09.02) "선금신청 제출의건"

나. 재무처-2453호('16.09.22.) "(주계약자)선금지급 알림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

3. 우리공사와 도급계약하여 귀사에서 시행중인 「중계 외 3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27공구)」와 관련하여, 귀사의 요청으로 지급된 선금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7호, '15.10.01.)"에 의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금배분 내역을 '16.09.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금사용 준수사항

1) 수령한 선금은 반드시 해당 계약의 자재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5일 이내), 선금수령일(하도급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나. 선금배분 결과 제출사항

1) 해당공정별 선금배분 내역

하도급 공정	하도급사	하도급 공정		선금금		비고

2) 세금계산서 사본

3) 선금배분 이체 확인증 사본 등

다. 행정사항

1) 상기 선금사용 준수사항을 위배할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선금 반환청구 예정이며,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선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8호 및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별표6)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리 김원기

부장 송기동

탐장 09/23
정이택

협조자 대리 박철우

시행 시설지원단-13111 (2016.09.23.)

접수

우 11726 경기도 의정부시 서계로 42/<http://www.smrt.co.kr>

전화 02-6311-8390 전송 02-6311-4044 / 2060327@smrt.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